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2025. 2. 28.

하나자산운용(주)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본인은 대표이사로서 본 보고서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기준에 의거, 진실되고 충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 합니다.

2025 년 2 월 28 일

하나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태 우

목 차

제 1 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1. 지배구조 일반.....	1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1
나. 지배구조 현황.....	1
1) 조직도	1
2) 지배구조의 특징	2
3) 지배구조 현황(요약).....	2
다. 관련 규정	3
2. 이사회.....	3
가. 역할(권한과 책임).....	3
1) 총괄	3
2) 구체적 역할	3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4
나) 정관 변경	4
다) 예산 및 결산 승인.....	4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4
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5
바)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5
사)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5
나. 구성(이사).....	6
1) 총괄	6
2) 구성원	6
가) 이사회의장.....	6
나) 이사	7
3) 요약	8
다. 활동내역.....	8
1) 활동내역 개요	8
2) 회의 개최내역	10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12
1) 이사회 평가.....	12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13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3
가. 역할(권한과 책임).....	13
나. 구성.....	13
다. 선임기준.....	14

1) 후보 자격요건	14
2) 후보 추천 절차	14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4
1) 활동내역 개요	14
2) 회의 개최내역	15
3) 평가	15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15
1) 감사위원 후보	15
2) 사외이사 후보	16
가) 후보자 인적사항	16
(1) 성명	16
(2) 출생연도	16
(3) 출신학교	16
(4) 경력	16
(5) 사외이사 경력	16
나) 후보 제안자	16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16
(2) 후보자와의 관계	17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7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17
(2) 후보자 추천경로	17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17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7
(1) 소극적 요건	17
(2)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18
(3) 본인 소명	18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18
사)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19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19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19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19
카)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20
4. 사외이사 활동. 보수 등	20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20
1)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20
가) 이사회	20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
다) 감사위원회	20

라) 위험관리위원회.....	20
마) 보수위원회.....	20
바) 기타 위원회.....	20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20
가) 활동내역.....	21
(1) 사외이사 최범수.....	21
(2) 사외이사 이창구.....	21
(3) 사외이사 안성윤.....	21
나) 요약.....	21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21
다. 사외이사 교육. 연수.....	21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22
1) 사외이사 최범수.....	22
가) 소극적 자격요건.....	22
나) 적극적 자격요건.....	22
다) 요약.....	22
2) 사외이사 이창구.....	22
가) 소극적 자격요건.....	22
나) 적극적 자격요건.....	22
다) 요약.....	23
3) 사외이사 안성윤.....	23
가) 소극적 자격요건.....	23
나) 적극적 자격요건.....	23
다) 요약.....	23
마. 기부금 등 지원내역.....	24
바. 사외이사 평가.....	24
1) 평가 개요.....	24
2) 내부평가.....	24
가) 내부평가 개요.....	24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24
(1) 총론.....	24
(2)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24
3) 외부평가.....	25
사. 사외이사 지원부서 활동내역.....	25
1)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25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25
1) 사외이사 최범수.....	25
가) 재직기간.....	25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의 제공 현황.....	25

2) 사외이사 이창구	25
가) 재직기간	25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의 제공 현황	26
3) 사외이사 안성윤	26
가) 재직기간	26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의 제공 현황	26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26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26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27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27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27
1) 일반	27
2) 비상계획	28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28
1) 소극적 요건	28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28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28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28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28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28
3) 후보군 현황	28
바. 이사회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28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29
6. 감사위원회	29
가. 역할(권한과 책무)	29
1) 총괄	29
2) 구체적 역할	29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29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29
다) 재무제표 검토 등	29
라) 기타	30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30
1) 총괄	30
2) 구성원	30
다. 활동내역 및 평가	30
1) 활동내역 개요	30
2) 회의 개최내역	31
3) 평가	32

라. 감사보조조직 등.....	32
7. 위험관리위원회.....	33
가. 역할(권한과 책무).....	33
1) 총괄.....	33
2) 구체적 역할.....	33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33
나)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33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33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33
마) 기타.....	34
나. 구성(위험관리위원회 위원).....	34
1) 총괄.....	34
2) 구성원.....	34
다. 활동내역 및 평가.....	35
1) 활동내역 개요.....	35
2) 회의 개최내역.....	35
3) 평가.....	36
8.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36
9.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37
제 2 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38
1. 보수위원회.....	38
가. 총괄.....	38
나. 구성.....	38
1) 총괄.....	38
2) 구성원.....	39
다. 권한과 책임.....	39
1) 총괄.....	39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39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40
4) 임원퇴직금규정 제정(안) 심의·의결.....	40
5)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40
6)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41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	41
8)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41

9)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41
10)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41
11)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금융투자업무담당자 제외)의 결정.....	42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42
1) 의사결정 절차.....	42
2) 활동내역 개요.....	42
3) 회의 개최내역.....	43
4) 평가.....	43
2. 보수체계.....	44
가. 주요사항.....	44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44
가) 회사 전체 또는 중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44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44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44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45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45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45
다)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45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45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45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46
다)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46
라)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46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46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46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46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46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47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47
나. 보수 세부사항.....	47
1) 임직원 총보수 (해당연도 실제 지급액기준).....	47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해당연도 실제 지급액 기준).....	47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47
1)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47
2) 성과보수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48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48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49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49

6) 이연보수의 조정	49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50

.....

- 첨부 1. 정관
- 첨부 2. 이사회규정
- 첨부 3. 지배구조내부규범
- 첨부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 첨부 5. 감사위원회규정
- 첨부 6. 위험관리위원회규정
- 첨부 7. 보수위원회규정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하나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의 전문성과 관점의 다양화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는 업무처리 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각각 수립·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로 위임하였고, 경영진의 업무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이 운영과정에서 경영진과의 유착으로 약화되지 않도록 이사회의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2024 년말 현재, 총 5 인의 이사회 구성원 중 3 인이 사외이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견제장치가 지배구조의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도 있지만, '견제 받지 않은 권한'은 지배구조의 취약점으로서 지배구조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견제의 틀 안에서 상호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성을 위하여, 주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간의 정기적, 비정기적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사 상호간의 전문성이 최대로 융합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여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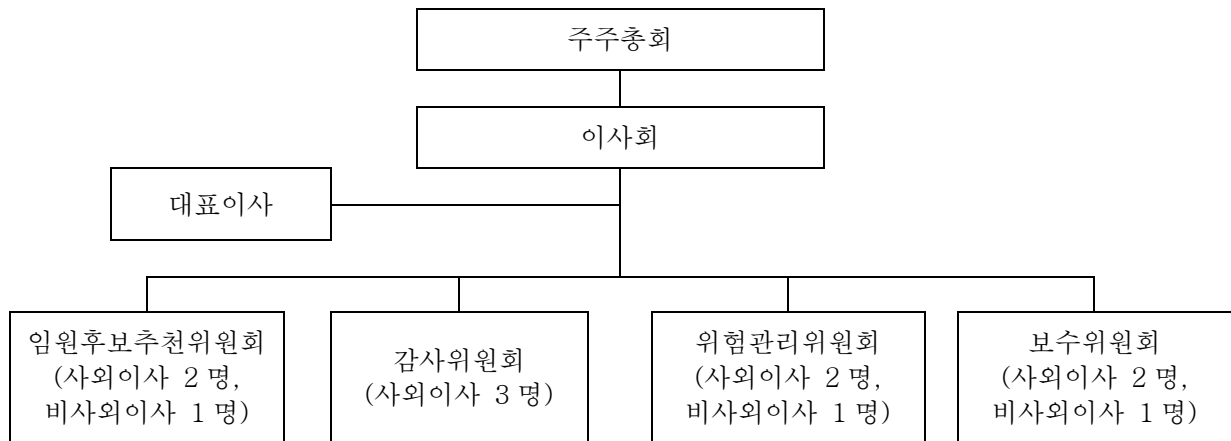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회사는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회사의 경영현황 및 이사회 등 주요 업무처리 상황을 정기·수시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 홈페이지의 회사정보 및 경영공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www.hanaam.com)

회사는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정착을 통하여 경영환경 및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지배구조의 원칙과 정책에 대하여 매년 적정성을 평가하여 수정·보완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2) 지배구조의 특징

2024년 말 현재, 총 5명의 등기이사 중 3명이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서 회사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으로는 이창구 사외이사가 2023년 10월 27일부터 2025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의 기간으로 선임되어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가 있습니다.

3) 지배구조 현황(요약)

2024년 정기주주총회 (2024.3.19.) 에서 선임된 임원 및 주주총회일과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구성된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2024.12 말 현재의 현황입니다.

내부기관	주요역할	구 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의 장 (이름/상임·비상임, 사내·사외)	관 련 규 정
이사회	회사 의사결정기구	3/5	이창구/비상임·사외 (`23.10.27~)	지배구조법 제 12 조 및 제 13 조 정관 제 5 장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2 장 이사회규정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	2/3	이창구/비상임·사외 (`23.10.27~)	지배구조법 제 16 조 및 제 17 조 정관 제 42 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16 조 및 제 18 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감사위원회	회사의 회계와 업무 감사	3/3	안성윤/비상임·사외 (`23.10.27~)	지배구조법 제 16 조 및 제 20 조 정관 제 42 조 및 제 6 장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16 조 및 제 19 조 감사위원회규정
위험관리 위원회	회사 위험관리 기구	2/3	최범수/비상임·사외 (`23.10.27~)	지배구조법 제 16 조 및 제 21 조 정관 제 42 조

내부기관	주요역할	구 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의 장 (이름/상임·비상임, 사내·사외)	관 련 규 정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16 조 및 제 21 조 위험관리위원회규정
보수위원회	임직원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승인	2/3	안성윤/비상임·사외 (`23.10.27~)	지배구조법 제 16 조 및 제 22 조 정관 제 42 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16 조 및 제 20 조 보수위원회규정

다. 관련 규정

- 첨부 1. 정관
- 첨부 2. 이사회규정
- 첨부 3. 지배구조내부규범
- 첨부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 첨부 5: 감사위원회규정
- 첨부 6: 위험관리위원회규정
- 첨부 7: 보수위원회규정

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회사의 이사회는 건전 경영의 기반 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영진의 경영활동의 기준·절차·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요구 함으로서 합리적인 경영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필요 시에는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지배구조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지배구조법 제 15 조)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5 의 2.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 및 정관,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하는 사항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목표에 대한 승인 및 평가를 합니다. 경영목표·전략 관련한 실무업무는 회사의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이에 대한 승인을 합니다.
(지배구조법 제 15 조제 1 항제 1 호, 정관 제 39 조제 2 항제 1 호)

회사는 2024 년 11 월 19 일 열린 이사회에서 2025 년 경영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나) 정관 변경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의할 정관변경 안을 심의·결의합니다. (지배구조법 제 15 조제 1 항 제 2 호, 정관 제 39 조 제 2 항 제 2 호)

회사는 2024 년 2 월 27 일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절차 변경에 따른 정관 개정의 건을 부의하고 승인하였습니다.

다) 예산 및 결산 승인

이사회는 회사의 결산 및 예산 안을 승인합니다. (지배구조법 제 15 조 제 1 항 제 3 호, 정관 제 39 조 제 2 항 제 3 호) 구체적 실무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업무집행책임자는 2024 년 1 월에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였고, 2024 년 2 월에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거쳐 감사위원회에 보고되었으며, 2024 년 2 월 27 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 2023 회계연도: 2023.1.1 ~ 2023.12.31.
- 자산총액: 828 억원
- 영업수익: 298 억원
- 영업비용: 232 억원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67 억원
- 당기순이익: 55 억원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이사회는 회사의 합병, 분할, 해산, 영업양수도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대하여 심의·의결합니다. (지배구조법 제 15 조 제 1 항 제 4 호, 정관 제 39 조 제 2 항 제 4 호)

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이사회는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지배구조법 제 15 조 제 1 항 제 5 호, 정관 제 39 조 제 2 항 제 5 호, 지배구조내부규범제 9 조)

회사는 2024 년 1 월 16 일 열린 이사회에서 대주주 변경 등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개정을 심의하였고, 2024 년 2 월 27 일 열린 이사회에서 관련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내부통제기준의 개정과 자기운용펀드예의 고유자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위험관리기준의 개정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바)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이사회는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지배구조법 제 15 조 제 1 항 제 6 호, 정관 제 39 조 제 2 항 제 6 호)

2024 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1 월 26 일, 3 월 5 일 총 2 회 개최되었습니다,

2024 년 1 월 26 일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김종원이 주요업무집행책임자(전략기획 및 재무관리 담당임원)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2024 년 3 월 5 일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재임중인 최범수 사외이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현재 회사는 경영승계에 대한 내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조속히 관련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도덕성, 회사의 비전 구현 능력, 업무 전문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공익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최고경영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사)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이사회는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지배구조법 제 15 조 제 1 항 제 7 호, 정관 제 39 조 제 2 항 제 7 호)

회사는 2024 년 7 월 23 일과 11 월 19 일, 12 월 20 일 열린 이사회에서 대주주인 하나증권주식회사 및 관계사인 하나금융계열 회사들과의 거래를 승인하였습니다.

나. 구성(이사)

1) 총괄

회사 이사회는 이사의 수는 총 3인 이상이며, 이사는 상임이사, 비상임이사(이하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를 합하여 “비사외이사”), 사외이사로 구분하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하되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관 제 32 조) 이는 지배구조법 상의 최소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지배구조법 제 12 조)

회사의 이사회는 2024 년말 현재 정관에 의거하여 1 인의 상임이사와 3 인의 사외이사 및 1 인의 비상임이사 등 5 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3 인의 감사위원은 모두 사외이사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 년 이하로 하며, 사외이사의 임기는 2 년 이하로 하되 1 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5 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합니다. (정관 제 34 조) 또한 사외이사의 임기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배구조법 제 6 조)

사외이사는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및 충실성을 갖추어야 하며,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지배구조법 제 6 조)

2024 년 말 현재, 사외이사를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재무학 분야 1 인, 경제학 분야 1 인, 금융업 분야 1 인 입니다.

이사회 의장은 지배구조법 제 13 조 및 정관 제 39 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바, 이창구 사외이사가 2025 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의 임기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2) 구성원

가) 이사회 의장

이창구

회사의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인 이창구 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창구 이사는 2023 년 10 월 27 일 임시주주총회에서 2023 년 10 월 27 일을 임기시작일로

2025년 정기주주총회일을 임기만료일로 하여 약 1년 5개월 간 회사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었으며, 동일한 임기시작일에 2024년 정기주주총회일을 임기만료일로 하여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고 정기주주총회일 2024년 3월 19일 직후 개최된 이사회에서 2025년 정기주주총회일을 임기만료일로 이사회 의장으로 1회 연임되었습니다. 또한, 이창구 이사는 이사회 내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며 감사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입니다. 회계학 전공자로서 한양대학교 상경대학 졸업이후, 신한은행에 입행하여 삼성동 PB 팀장, 지점장, 서울 FC PB 센터장, 중국현지법인 부서장, PB 그룹 총괄본부장, PB 그룹 부행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신한금융투자 PB 그룹 부사장과 신한금융지주 PB 그룹 부사장 등을 거쳐 신한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국내 금융기관에서 약 35년 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나) 이사

최범수

사외이사이며 2020년 3월 1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1년을 임기로 최초선임되었으며, 2021년 3월 24일 정기주주총회, 2022년 3월 24일 정기주주총회, 2023년 3월 29일 정기주주총회 및 2024년 3월 1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각각 1년 임기로 연임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감사위원회 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최범수 이사는 경제학 박사로서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원을 역임하였으며 증권거래소 상장심사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문관, 국민은행 부행장,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신한아이타스 대표이사, 한국크레딧뷰로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다양한 금융기관 및 감독기관, 그리고 연구기관 에서 약 30년 간 근무한 경제 및 금융전문가 입니다.

이창구

위 가)의 내용 참조 바랍니다.

안성윤

사외이사이며 2023년 10월 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2023년 10월 27일을 임기시작일로 2025년 정기주주총회일을 임기만료일로 하여 약 1년 5개월 간 회사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었습니다. 안성윤 이사는 이사회 내의 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보수위원회 위원장이며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입니다. 회계학 박사로서 2010년 3월부터 현재까지 가톨릭대학교 경영계열 회계학과에서 정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정부회계학회 등 학회의 전현직 위원장, (상임)이사를 역임하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의 정부 기관에서 평가위원, 심의위원, 경영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회계 전문가로서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의 저서 및 논문을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김정기

비상임이사이며 2023년 10월 27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2025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를 임기로 최초선임되었으나 2024년 12월 31일

개인사정으로 사임하였습니다. 김정기 이사는 2024 년중 이사회 내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홍익대학교 경영정보학과를 졸업한 후 하나증권 경영기획실 부장, 신용리스크관리실 부장, 전략기획실 실장 등을 거쳐 하나증권 경영전략본부 본부장으로 재임하였고, 20 년 이상 금융권의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태우

2023 년 10 월 27 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2023 년 10 월 27 일을 임기시작일로 2025 년 10 월 26 일을 임기만료일로 하여 2 년 간 회사의 상임이사 및 대표이사로 최초 선임되었습니다. 김태우 이사는 이사회 내의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및 보수위원회 위원입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및 뉴욕대학교(Stern School) 국제금융학 석사이며, 1993 년 하나은행에 입행한 이후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피델리티자산운용 한국 주식투자부문 대표(Country Head) 등을 거쳐 2016 년부터 약 7 년간 다올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역임,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약 30 년 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금융 전문가입니다.

3) 요약

성 명	사외/ 상임/비상임	직 위	경 력	최초 취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기간 (2024.12.말 기준)	담당위원회
이창구	사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	-전) 신한자산운용 대표이사 -전) 신한금융지주 PB 그룹 부사장 -전) 신한금융투자 PB 그룹 부사장	2023.10.27	2025 정기주총일	14 개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최범수	사외	감사위원	-전) 한국크레딧뷰로 대표이사 -전) 신한아이다스 대표이사 -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2020.3.18.	2025 정기주총일	57 개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안성윤	사외	감사위원	-현)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정교수	2023.10.27	2025 정기주총일	14 개월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김정기	비상임		-전) 하나증권 경영전략본부장 -현) 하나증권 전략운용본부장	2023.10.27	2024.12.31(사임)	14 개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김태우	상임	대표이사	-전) 다올자산운용 대표이사 -전) 피델리티자산운용 한국 주식투자부문 대표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2023.10.27	2025.10.26	14 개월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024 년 중 총 8 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이사의 참석률 및 사외이사의 참석률은 100%입니다. 이사들은 회의에 직접 참석하였습니다.

2024 년 1 월 26 일 개최된 제 1 회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2023 년 결산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해 승인하였고, 김태우 상임이사를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및 보수위원회 위원으로, 김정기 비상임이사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주요업무집행책임자(전략기획 및 재무관리 담당임원) 후보로 추천된 김종원을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0 조제 6 항 및 제 49 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 37 조에 따라 2023 년도 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보고 실태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 11 조 제 5 항에 따라 2023 년 내부통제체계의 실태 및 운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내용 및 그 결과, 임직원 교육 결과 등을 보고받았고,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받았습니다.

2024 년 2 월 27 일 개최된 제 2 차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대주주 변경에 따른 정관 개정(안)의 승인과 이사회규정 개정,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정, 감사위원회규정 개정, 위험관리위원회규정 개정, 보수위원회규정 개정, 내부통제기준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완전개정을 승인하였고 2024 년 3 월 19 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23 년도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2024 년도 임원보수한도를 승인 안건으로 하고 2023 년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를 보고 안건으로 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8 조 제 4 항 및 제 5 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와 평가에 대한 보고를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로부터 받았으며, 이는 2023 년 말 현재 회사의 자산총액이 1 천 억 원 이상인 것에 따른 의무 보고 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으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실시한 내부통제체계 주요 점검 사항, 표준영업행위 준칙에 근거하여 실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 및 투자광고 적정성에 대한 점검 결과에 대하여 보고받았고 상법 제 393 조 제 4 항에 따라 2023 년 4/4 분기의 영업실적을 보고받았으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2-67 조 제 4 항에 따라 2023 년 재산상 이익 제공에 대한 적정성 점검 결과를 보고받았고, 이사회규정 제 13 조 제 4 호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상환 사모펀드의 이수관에 대하여 보고받았습니다.

2024 년 3 월 19 일 정기주주총회 이후 개최된 제 3 회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2024 년 3 월 19 일부터 2025 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사외이사 이창구를 이사회 의장으로, 의장 부재 시 직무대행을 사외이사 최범수, 사외이사 안성윤 순으로 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창구(위원장), 최범수, 김정기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안성윤(위원장), 이창구, 최범수로 감사위원회를, 최범수(위원장), 안성윤, 김태우로 위험관리위원회를, 안성윤(위원장), 이창구, 김태우로 보수위원회를 각각 2024 년 3 월 19 일부터 2025 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재구성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2024 년 4 월 23 일 개최된 제 4 회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상법 제 393 조 제 4 항에 따라 2024 년 1/4 분기의 영업실적을 보고받았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받았습니다.

2024 년 7 월 23 일 개최된 제 5 회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준법감시인으로 황재홍을 선임(연임), 위험관리책임자로 주영준을 신규 선임하였고 상법 제 398 조에 따라 하나금융그룹 내 관계회사와의 공통비용 배부기준을 포괄 승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상법 제 393 조 제 4 항에 따라 2024 년 2/4 분기의 영업실적을 보고받았으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 16 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고,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받았습니다.

2024 년 10 월 22 일 개최된 제 6 회 이사회에서도 이사들은 상법 제 393 조 제 4 항에 따라 2024 년 3/4 분기의 영업실적을 보고받았고, 내부규정인 집합투자재산평가규정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영업행위 규정에 의거하여 2024 년 상반기 중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결과와 금융소비자 내부통제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점검 결과에 대하여 각각 보고를 받았습니다.

2024 년 11 월 19 일 개최된 제 7 회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2025 년 경영계획의 승인과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의 2 에 따른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상법 제 398 조에 따라 하나금융계열회사인 하나손해보험과의 거래를 각각 승인하였고, 이어서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받았습니다.

2024 년 12 월 20 일 개최된 제 8 회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상법 제 398 조에 따라 대주주인 하나증권주식회사 및 대주주의 관계회사인 하나금융계열회사와의 거래를 승인하였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전략기획 및 재무관리 담당임원) 후보로 추천된 김종원을 선임(연임)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2024 년 제 1 회 이사회: 2024.1.26. 오전 11 시 (안전통지일: 2024.1.19.)

항목		이사 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이창구	안성운	최범수	김태우	김정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대한의견 ¹⁾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4. 의결안건							
가. 2023 년(제 24 기) 결산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영업보고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변경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 실적 보고,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 보고, 위험관리위원회 결과 보고, 보수위원회 결과 보고

2) 전략기획 및 재무관리 담당임원 김종원(2024 년 1 월 26 일부터 2024 년 12 월 31 일까지)

2024 년 제 2 회 이사회: 2024.2.27. 오후 4 시 (안전통지일: 2024.2.20.)

항목		이사 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이창구	안성운	최범수	김태우	김정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대한의견 ¹⁾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4. 의결안건							
가. 정관 개정(안)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이사회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감사위원회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위험관리위원회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보수위원회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내부통제기준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자.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완전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차. 제 25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 의안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제 24 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제 24 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보고,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2023 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점검 결과 보고, 2023 년 4/4 분기 영업실적 보고, 재산상 이익 제공에 대한 적정성 점검 보고, 미상환 사모펀드 이수관 보고

2024 년 제 3 회 이사회: 2024.3.19. 오전 11 시 (안전통지일: 2024.3.19.)¹⁾

항목	이사 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이창구	안성윤	최범수	김태우	김정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이사회 의장 선임 및 직무대행 순서 결정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2024.3.19.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가 새로 구성되어 당일 통지 (임기중인 비사외이사들에게는 일주일 전 통지)

2) 이창구(이사회 의장), 부재시 최범수, 안성윤 순, 2024 년 3 월 19 일부터 2025 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이하 위원회 임기 동일하며, 의장 및 위원장 선임시 본인의 건은 의결권 행사하지 않음)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이창구(위원장), 최범수, 김정기
 감사위원회: 안성윤(위원장), 이창구, 최범수
 위험관리위원회: 최범수(위원장), 안성윤, 김태우
 보수위원회: 안성윤(위원장), 이창구, 김태우

2024 년 제 4 회 이사회: 2024.4.23. 오후 4 시 (안전통지일: 2024.4.16.)

항목	이사 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이창구	안성윤	최범수	김태우	김정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대한의견 ¹⁾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1) 2024 년 1/4 분기 영업실적 보고,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2024 년 제 5 회 이사회: 2024.7.23. 오전 11 시 (안전통지일: 2024.7.16.),

항목	이사 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이창구	안성윤	최범수	김태우	김정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대한의견 ¹⁾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4. 의결안건							
가. 준법감시인 선임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³⁾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그룹 공통비용 배부기준 포괄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2024년 2/4분기 영업실적 보고, 자금세탁방지 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고,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2) 준법감시인 황재홍(2024년 8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 위험관리책임자 주영준(2024년 8월 19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4년 제6회 이사회: 2024.10.22. 오후 4시 (안전통지일: 2024.10.15.)

항목	이사 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이창구	안성윤	최범수	김태우	김정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대한의견 ¹⁾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 1) 2024년 3/4분기 영업실적 보고, 2024년 상반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결과 보고, 2024년 상반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점검 결과 보고

2024년 제7회 이사회: 2024.11.19. 오전 11시 (안전통지일: 2024.11.12.)

항목	이사 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이창구	안성윤	최범수	김태우	김정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대한의견 ¹⁾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4. 의결안건						
가. 2025년 경영계획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하나금융계열회사(하나손해보험)와의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2024년 제8회 이사회: 2024.12.20. 오전 11시 (안전통지일: 2024.12.13.)

항목	이사 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이사성명	이창구	안성윤	최범수	김태우	김정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하나증권주식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하나금융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연임)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전략기획 및 재무관리 담당임원 김종원(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1) 이사회 평가

회사는 이사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기관 및 경영진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한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결산

이후 이사회 구성원 및 이사회 지원부서를 대상으로 전년도 이사회의 기능과 운영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 년 이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 진행한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문항 수	평점(5 점 만점)
이사회의 기능 역할 책임	13 문항	4.18
이사회 운영	14 문항	4.41
이사회 평가체계	7 문항	3.97
이사의 구성과 이사의 자격	10 문항	4.24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각 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 및 각 위원회가 당 금융회사의 주요의사결정기구 및 경영진 견제기구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사에 대한 직무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고, 여기에는 이사회 규모의 적정성, 이사회 구성의 적절성, 경영진 자문·감독 기능 수행, 의사결정에 금융회사의 윤리적 의무 및 사회적 책임사항 반영, 자료 제공의 적시성, 자료의 충실성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평가는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서 위임하여 수행하였습니다.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회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간 계약에 근거하여, 주주들로부터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받아서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검증을 실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추천후보들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소극적 자격요건, 책임성, 윤리성, 충실성 등을 평가하고, 경력 중심으로 전문성을 평가하며 이러한 평가 과정을 거쳐 선택된 후보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추천하였습니다.

나. 구성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3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2024 년 1 월 26 일 열린 이사회에서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하였고, 2024 년 3 월 19 일 정기주주총회 직후 개최된 이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이창구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최범수 사외이사와 김정기 비상임이사를 위원으로 선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전체위원 중 사외이사의 비율은 67%이며, 위원장 또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성명	상임/비상임,사외/사내	직위	선임일 및 임기만료일	주요약력
이창구	비상임,사외	위원장	2023.10.27~ 2025 정기주주총회일	신한자산운용 대표이사
최범수	비상임,사외	위원	2023.10.27~ 2025 정기주주총회일	한국크레딧뷰로 대표이사
김태우	상임,사내	위원	2023.10.27~ 2024.1.26	다올자산운용 대표이사
김정기	비상임,사내	위원	2024.1.26~ 2024.12.31.(만료 전 사임)	하나증권 경영전략본부장

다. 선임기준

1) 후보 자격요건

사외이사 후보, 대표이사 후보 및 감사위원 후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고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력 및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2) 후보 추천 절차

당사는 회사 및 그룹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하여 임원후보 추천 관련 절차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이사회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을 선정하였고, 사외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 중 결원이 발생시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추천 후보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검증 및 업무 능력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4 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1 월 26 일, 3 월 5 일 총 2 회 개최되었습니다,

2024 년 1 월 26 일 개최된 제 1 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2024 년 2 월 27 일 개정 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대표집행임원(전략기획 및 재무관리 담당임원) 후보인 김종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위 후보가 각각 지배구조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경력확인 및 본인확인, 본인 동의 하의 신원조회 및 금융투자협회 비위행위 조회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김종원 전략기획 및 재무관리 담당임원 후보가 경영공학 전공 후, 국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에서 20 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바 전략기획 및 재무관리 담당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후보의 임기는 2024 년 1 월 26 일부터 2024 년 12 월 31 일까지로 하였습니다.

2024년 3월 5일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기가 만료된 최범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후임 선임에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정관 제 45 조 제 7 항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인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하며, 기존 최범수 사외이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되었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해당 후보에 대하여 본인확인, 경력확인, 신원조회, 금융투자협회 조회를 통하여 지배구조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임원 및 사외이사, 감사위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최범수 사외이사의 임기는 사외이사 임기를 2년 이하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에 따라 2024년 정기주주총회일인 2024년 3월 19일부터 2025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약 1년으로 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2024년 제 1 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4.1.26. (안전통지일: 2024.1.26.)¹⁾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이창구	최범수	김태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심의)안건				
가.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추천 (후보자 김중원)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2024.1.26. 이사회 이전 위원장의 개최 필요성 인정에 따른 소집

2024년 제 2 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4.3.5. (안전통지일: 2024.2.27.)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이창구	최범수	김정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심의)안건				
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추천 (후보자 최범수)	찬성	의결권불행사*	찬성	가결

* 본인 건으로 가부 결정에 대한 의결권 불행사

3) 평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1) 감사위원 후보

최범수 후보자에 대한 아래 2)사외이사후보 항목 참조

후보제안자 김정기 비상임이사는 최범수 감사위원 후보를 하나증권(주) 주주로부터 제안 받아, 제 2 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였습니다.

후보제안자와 후보 간에는 회사의 이사회 활동을 같이 한 것 외에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2) 사외이사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최범수

(2) 출생연도

1956 년

(3) 출신학교

경남고등학교 졸업 (1975 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학사 (1979 년),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제학석사 (1981 년), 미국예일대학교 경제학박사 (1989 년)

(4) 경력

2007.5.~2013.5.: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2013.5.~2014.3.: 신한아이타스 대표이사
2014.3.~2017.3.: 한국크레딧뷰로 대표이사

(5) 사외이사 경력

사외이사 기간: 2020 년 3 월부터

감사위원 기간: 2023 년 10 월부터

활동내역: 이사회 참석 38 회 (참석률: 100%), 위원회 참석 32 회 (참석률 100%)

주요사안: 임원후보자자격요건 검토 및 추천, 회사 위험관리체계 및 보수체계 검토,
외부감사인 선임 검토, 회사 영업 및 운영 현황 검토

* 위 참석률은 모두 2024 년 말 기준입니다.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김정기

2023.08 ~ 2024 년말 하나증권(주) 경영전략본부 본부장

(2)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제안자 김정기 비상임이사는 최범수 감사위원 후보를 하나증권(주) 주주로부터 제안 받아, 제 2 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였습니다.

후보제안자와 후보 간에는 회사의 이사회 활동을 같이 한 것 외에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최범수는 경제학 박사로 한국개발연구원, 금융개혁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전문가로 다년간 활동하였으며, KB 국민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유수의 금융기관 임원을 역임하였고, 신한아이타스 대표이사 및 코리아크레딧뷰로의 사장을 역임한 바 업무 이력에 비추어 회사 사외이사로서의 업무 수행능력을 갖추었다 판단하였으며, 최초 선임 이후,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직무공정성, 책임성, 윤리성, 충실성을 갖추었다 판단하여, 하나증권 주주의 추천을 받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최범수 후보는 회사 대주주(단일주주)인 하나증권(주)가 추천한 후보입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②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③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관련법령: 지배구조법 제 5 조 및 제 6 조

평가: 본적지 신원조회 및 금융투자협회 비위행위 조회를 통하여 관련법령 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본인 확인을 통하여 회사 및 주주 등과 거래 및 인적 관계 없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관련법령 상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가) 전문성

경제학 박사로 한국개발연구원, 금융개혁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전문가로 다년간 활동하였으며, KB 국민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유수의 금융기관 임원을 역임하였고, 신한아이타스 대표이사 및 코리아크레딧뷰로의 사장을 역임한 바 충분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직무공정성

사외이사 선임 후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윤리성, 책임성

이사회 및 담당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충실한 사전 검토를 하고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회의 시 회사의 위험관리체계, 보수체계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는 등 소비자 및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비추어 책임성 및 윤리성을 갖추었다 판단됩니다.

(라) 충실성

2024 년 개최된 총 8 회의 이사회에 모두 참석하였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회, 위험관리위원회 5 회, 감사위원회 4 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3) 본인 소명

위 사외이사 후보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 및 제 6 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 7 조에서 정하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심사항목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며, 또한 법률 제 19 조 및 시행령 제 16 조가 정한 감사위원의 자격요건도 충족하고 있으며,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및 충실성을 갖추고 있다 판단되며, 경제 또는 경영학 학위 소지자로서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 및 학계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충분합니다. 후보자는 임원으로서 자격 요건 충족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날인하였고 회사는 확인서를 징구하였습니다.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2024 년 3 월 5 일 개최된 제 2 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범수 후보자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고, 후보자들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업무 수행 능력 등의 적극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최범수 후보는 연임이며 임기는 2024년 3월 19일부터 2025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입니다.

사)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2024년 정기주주총회에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는 총 1명이었고 이 중 1명이 연임하였으며, 내부 평가 결과 연임한 사외이사 모두 사외이사로서 적합한 것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사외이사명	재임기간	연임여부	이사회 출석율 ¹⁾
최범수(감사위원)	2020.3.18.~2025 정기주총일	연임	100%

1) 출석율은 2024년 말 기준입니다.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학력: 경남고등학교 졸업 (1975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학사 (1979년),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제학석사 (1981년), 미국예일대학교 경제학박사 (1989년)

경력: 신한금융지주 부사장(2007.5.~2013.5.), 신한아이타스 대표이사(2013.5.~2014.3.), 한국크레딧뷰로 대표이사(2014.3.~2017.3.)

이사회 활동 내역:

사외이사 기간: 2020년 3월부터

주요사안: 임원후보자격요건 검토 및 추천, 회사 위험관리체계 및 보수체계 검토, 외부감사인 선임 검토, 회사 영업 및 운영 현황 검토

김정기 위원 추천 /하나증권(주) 추천

법령 상의 요건:

지배구조법 제5조 및 제6조 요건 충족

기타 결격 사유 없음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당사는 독립적으로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지 않고, 대주주인 하나증권(주)가 관리하는 후보군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현재 재임 중인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향후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해당 내용 없음

카)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해당 내용 없음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1)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가) 이사회

위 제 1 절 지배구조연차보고서, 2. 이사회, 다. 활동내역, 2) 회의 개최내역 참조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 제 1 절 지배구조연차보고서,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라. 활동내역 및 평가, 2) 회의 개최내역 항목 참조

다) 감사위원회

아래 제 1 절 지배구조연차보고서, 6. 감사위원회, 다. 활동내역 및 평가, 2) 회의 개최내역 항목 참조

라) 위험관리위원회

아래 제 1 절 지배구조연차보고서, 7. 위험관리위원회, 다. 활동내역 및 평가, 2) 회의 개최내역 항목 참조

마) 보수위원회

아래 제 2 절 보수체계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3) 회의 개최내역 항목 참조

바) 기타 위원회

해당 사항 없음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가) 활동내역

(1) 사외이사 최범수

사외이사 최범수는 2024 년 중 개최된 총 8 회의 이사회에 모두 참석하였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회, 감사위원회 4 회, 위험관리위원회 5 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회사 현황, 회사 운용 펀드 및 관련 시장 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 받고, 검토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2) 사외이사 이창구

사외이사 이창구는 2024 년 중 개최된 총 8 회의 이사회에 모두 참석하였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회, 감사위원회 4 회, 보수위원회 3 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회사 현황, 회사 운용 펀드 및 관련 시장 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 받고, 검토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사외이사 안성윤

사외이사 안성윤은 2024 년 중 개최된 총 8 회의 이사회에 모두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4 회, 위험관리위원회 5 회, 보수위원회 3 회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회사 현황, 회사 운용 펀드 및 관련 시장 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 받고, 검토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나) 요약

구분 사외이사명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시간
	개최	참여	찬성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실적
최범수	8	8	23	2	2	1	4	4	7	5	5	5				
이창구	8	8	23	2	2	2	4	4	7				3	3	4	
안성윤	8	8	23				4	4	7	5	5	5	3	3	4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회사의 지주사인 하나금융지주에서 임원배상책임 보험에 일괄 가입하고 있으며, 전체 보상 한도액은 500 억원이고, 회사를 포함한 하나금융 계열회사들이 피보험자입니다. 사외이사 자기부담액은 최대 1 억원 한도 이내에서 배상책임액의 2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매 이사회 개최 시 자산운용 전반, 시장 동향, 회사의 사업에 대한 보고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연수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 사외이사 최범수

가) 소극적 자격요건

위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마. 임원후보추천 관련사항 2) 사외이사후보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자격요건의 내용과 같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위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마. 임원후보추천 관련사항 2) 사외이사후보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3) 적극적 자격요건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지배구조법제 5 조	충족	해당 사항 없음
나. 지배구조법제 6 조	충족	해당 사항 없음
2) 적극적 요건		
가.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 (전문성)	충족	경제학 박사로 금융기관 및 감독기관과 연구기관 에서 약 30 년 간 근무한 경제 및 금융전문가
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
다.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 책임감 소유
라.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에 적극적 참여
마.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 (전문지식/실무경험)	충족	경제학 박사로 금융기관 임원 역임 및 감독기관과 연구기관 에서 약 30 년 간 근무한 경제 및 금융전문가

2) 사외이사 이창구

가) 소극적 자격요건

위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마. 임원후보추천 관련사항 2) 사외이사후보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자격요건의 내용과 같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위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마. 임원후보추천 관련사항 2) 사외이사후보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3) 적극적 자격요건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지배구조법제 5 조	충족	해당 사항 없음
나. 지배구조법제 6 조	충족	해당 사항 없음
2) 적극적 요건		
가.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 (전문성)	충족	국내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역임 등
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
다.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 책임감 소유
라.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에 적극적 참여
마.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 (전문지식/실무경험)	충족	35 여년 간 은행, 금융지주, 자산운용사에서 근무한 금융전문가

3) 사외이사 안성윤

가) 소극적 자격요건

위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마. 임원후보추천 관련사항 2) 사외이사후보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자격요건의 내용과 같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위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마. 임원후보추천 관련사항 2) 사외이사후보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3) 적극적 자격요건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지배구조법제 5 조	충족	해당 사항 없음
나. 지배구조법제 6 조	충족	해당 사항 없음
2) 적극적 요건		
가.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 (전문성)	충족	회계 전문가 (박사, 교수)

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직무공정성)	충족	주주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
다.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윤리책임성)	충족	고도의 윤리의식, 책임감 소유
라.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충실성)	충족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에 적극적 참여
마.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8 조(전문지식/실무경험)	충족	가톨릭대학교 경영계열 회계학과 정교수

마. 기부금 등 지원내역

해당 사항 없음

바. 사외이사 평가

1) 평가 개요

사외이사의 임기를 1 년으로 제한하되 5 년까지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의 역량·자질 및 실적 등에 대해 매년 이사회에 의한 내부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 시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외부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 내부평가

가) 내부평가 개요

2024 년 말 현재,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명시적인 내부 평가 기준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의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횟수, 업무에 대한 관심도 및 이해도 등을 기준으로 내부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1) 총론

사외이사에 대하여 이사회와 이사회내 위원회 출석률과 참여도 회사 업무의 이해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3 인의 사외이사 모두 전문성, 충실성, 기여도 등에서 우수하거나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사외이사	평가결과					개선방안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	기타	
최범수	우수함	우수함	우수함	우수함	-	-
이창구	우수함	우수함	우수함	우수함	-	-

안성윤	우수함	우수함	우수함	우수함	-	-
-----	-----	-----	-----	-----	---	---

이사들은 회의 이전 사전 배포한 회사 영업 전반에 대한 자료, 보고 및 승인 안전 등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숙지한 후 회의에 참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외부평가

2024 년 회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사. 사외이사 지원부서 활동내역

1)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회사는 별도의 지원부서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추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재직기간은 최초선임부터 2024 년 12 월까지를 보수 및 제공 편익은 2024 년 1 년 간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1) 사외이사 최범수

가) 재직기간

약 4 년 9 개월 (임기: 2020.3.18. ~ 2025 정기주주총회일)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 목		금 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43,200,000 원	
	기본금	43,200,000 원	월 기본금 360 만원 x 12 개월
	상여금	해당사항 없음	
	기타 수당	해당사항 없음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6,000,000 원	거마비 등. 월 50 만원
	건강검진 지원	해당사항 없음	
	차량제공	해당사항 없음	
	사무실제공	해당사항 없음	
	기타 편익제공	해당사항 없음	

2) 사외이사 이창구

가) 재직기간

약 1년 2개월 (임기: 2023.10.27. ~ 2025 정기주주총회일)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 목		금 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43,200,000 원	
	기본금	43,200,000 원	월 기본금 360 만원 x 12 개월
	상여금	해당사항 없음	
	기타 수당	해당사항 없음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6,000,000 원	거마비 등. 월 50 만원
	건강검진 지원	해당사항 없음	
	차량제공	해당사항 없음	
	사무실제공	해당사항 없음	
	기타 편익제공	해당사항 없음	

3) 사외이사 안성윤

가) 재직기간

약 1년 2개월 (임기: 2023.10.27. ~ 2025 정기주주총회일)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 목		금 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43,200,000 원	
	기본금	43,200,000 원	월 기본금 360 만원 x 12 개월
	상여금	해당사항 없음	
	기타 수당	해당사항 없음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6,000,000 원	거마비 등. 월 50 만원
	건강검진 지원	해당사항 없음	
	차량제공	해당사항 없음	
	사무실제공	해당사항 없음	
	기타 편익제공	해당사항 없음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해당 내역 없음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성명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일	재임기간	담당위원회	직위	주요경력
----	-------	-------	------	-------	----	------

김영일	2019.03.19.	2021 정기주총일 (2021.1.사업)	21 개월	임추위(2019.3.~2020.3.) 감사위(2019.3.~2021.1.) 위험위(2019.3.~2020.3.) 보수위(2020.3.~2021.1.)	감사위 위원장 (2020.3~2021.1.)	하나금융지주 재무기획팀 팀장
이장욱	2019.06.27.	2024 정기주총일 (2023.10.사업)	52 개월	임추위(2020.3.~2023.10.) 감사위(2019.6.~2023.10.) 위험위(2019.6.~2020.3.) 보수위(2020.3.~2021.3.) 보수위(2023.3~2023.10)	감사위 위원장 (2021.3~2022.3.) 보수위 위원장 (2023.3.~10.)	모건스탠리증권, JP 모건증권 영업본부장 역임
최범수	2020.03.18.	2025 정기주총일	57 개월	임추위(2020.3.~2022.3.) 임추위(2023.3.~2025.3.) 위험위(2020.3.~2023.3.) 위험위(2023.10.~2025.3.) 보수위(2021.1.~2023.3.) 감사위(2023.10.~2025.3.)	임추위 위원장 (2023.3.~2023.10.) 위험위 위원장 (2023.10.~2025.3.)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신한아이타스 대표이사, 한국크레딧뷰로 대표이사 역임
이정훈	2021.03.24.	2022.6.14.	15 개월	임추위(2021.3.~2022.6.) 감사위(2021.3.~2022.6.)	감사위 위원장 (2022.3.~2022.6)	하나은행 AML 팀 차장/경영관리부 기타관리자 역임 하나금융지주 IR 팀 팀장 역임
황준호	2022.03.24.	2024 정기주총일 (2023.10.사업)	19 개월	임추위(2022.3.~2023.3.) 감사위(2022.3.~2023.10.) 위험위(2022.3.~2023.10.) 보수위(2022.3.~2023.3.)	감사위 위원장 (2023.3~10.)	현)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근훈	2022.06.14.	2024 정기주총일 (2023.10.사업)	10 개월	임추위(2022.6.~2023.3.) 감사위(2022.3.~2023.3.)	감사위 위원장 (2022.3.~2022.6)	하나은행 암스텔담 지점장 역임 현)하나금융지주 IR 팀 팀장
김주희	2023.03.29	2024 정기주총일 (2023.10.사업)	7 개월	임추위(2023.3.~2023.10.) 감사위(2023.3.~2023.10.) 위험위(2023.3.~2023.10.) 보수위(2023.3.~2023.10.)	위험위 위원장 (2023.3.~2023.10.)	현)하나금융지주 재무기획팀장
이창구	2023.10.27	2025 정기주총일	14 개월	임추위(2023.10.~2025.3.) 감사위(2023.10.~2025.3.) 보수위(2023.10.~2025.3.)	임추위 위원장 (2023.10.~2025.3.)	신한은행 PB 그룹 부행장 신한자산운용 대표이사 역임
안성운	2023.10.27	2025 정기주총일	14 개월	감사위(2023.10.~2025.3.) 위험위(2023.10.~2025.3.) 보수위(2023.10.~2025.3.)	감사위 위원장 (2023.10.~2025.3.) 보수위 위원장 (2023.10.~2025.3.)	현) 가톨릭대학교 경영계열 회계학과 정교수

현재 임기 중인 임원의 재직기간은 2024 년 12 월까지를 기준으로 함.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당사는 별도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을 제정하지 않았으나, 관련 법령을 반영한 내부규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회사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는 대주주인 하나증권(주)의 협의를 거쳐 지배구조법 상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2) 비상계획

당사는 별도의 비상계획절차를 제정하지 않았지만, 정관 제 37 조(이사의 직무)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지배구조법 제 5 조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 상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최대주주인 하나증권(주)과 협의하여 금융분야에 전문 지식과 충분한 업무 경력을 가진자를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있으나, 회사 자체의 내부규정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후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경영 원칙 등을 반영하여 대표이사의 자격 요건에 관한 내부 규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해당내역 없음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당사는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향후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지침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해당내역 없음

3) 후보군 현황

해당내역 없음

바. 이사회 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별도의 승계계획은 없으나, 대주주인 하나증권(주)과 협의하여 지명한 후보에 대한 관련 법령 상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및 주주총회 결의로

최고경영자를 선임하여 왔습니다. 추후, 지배구조법 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경영승계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회사는 별도의 지원부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해 적법성 감독뿐만 아니라 적정성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포함한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감사위원회는 관계 법령 및 내부규범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의 안전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심의를 거쳐 이사회 및 해당 위원회에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집행에 대해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상법 제 412 조),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 402 조).

이에 따라, 감사위원들은 2024 년도에 경영진으로부터 사업실적, 재무상황, KPI 및 위험통제와 오퍼레이션에 대한 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습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24 년 11 월 감사위원회를 개최, 외부감사계획을 제안한 “한영회계법인”에 대해 선정 심사와 평가를 하여 2025~2027 회계연도 회사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 재무제표 검토 등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전에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상법 제 447 조의 3, 제 447 조의 4).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제출한 2023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해 감사를 수행하였으며, 동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2024 년 제 25-1 차 감사위원회에서 승인하고 이사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대표이사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관해 보고 받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8 조).

라) 기타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준법감시인이 수행한 내부통제점검 결과의 중요 내용을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사담당부서장에게 감사에 대한 사항을 위임하며, 감사담당부서장은 주요 처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1) 총괄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위원 중 1인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합니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9 조). 당사 감사위원회는 모두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인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안성운)가 포함되어 있어 상기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안성운	비상임·사외	위원장	2023.10.27	2025 정기주총일
이창구	비상임·사외	위원	2023.10.27	2025 정기주총일
최범수	비상임·사외	위원	2023.10.27	2025 정기주총일

2024년 12월 31일 기준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4년에는 총 4 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어, 부의 안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수행하였으며,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정성에 대해 보고 받고 점검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전 의안을 감사위원들에게 공유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사전 설명을 통하여 감사위원들의 이해를 돕고 있어, 다양한 전문적인 배경을 지닌 위원들이 감사위원회에서 활발한 토의가 가능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2024 년 제 1 회 감사위원회: 2024.2.27. (안전 통지일: 2024.2.2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안성윤	이창구	최범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¹⁾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4. 의결안전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채택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 채택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감사위원회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감사업무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2024 년도 내부감사 실시계획(안)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3 조제 4 항에 따라 대표이사가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

2024 년 제 2 회 감사위원회: 2024.6.21. (안전 통지일: 2024.6.14.) 전화회의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안성윤	이창구	최범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				
가. 상반기 내부감사결과 보고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2024 년 제 3 회 감사위원회: 2024.7.23. (안전 통지일: 2024.7.1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안성윤	이창구	최범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				
가. 금융감독원 조치요구사항 보고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2024 년 제 4 회 감사위원회: 2024.11.19. (안전 통지일: 2024.11.1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안성윤	이창구	최범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				
가. 금융감독원 조치요구사항에 따른 조치결과보고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나. 내부감사 결과보고				
4. 의결안전				
가. 2025 년~2027 년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5 년도 내부감사 실시계획(안)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검토함으로써, 감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의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 등을 통해 감사위원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수준, 위원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전 제공여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라. 감사보조조직 등

당사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감사보조조직으로 컴플라이언스본부 감사팀을 두고 있습니다. 2024 년말 현재 감사보조조직은 준법감시인 1 명과 감사팀 1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감사 업무를 위임받아 감사계획 수립 및 이에 근거한 감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감사활동에 대한 결과와 감독기관 수검 결과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7. 위험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집합투자재산 및 고유재산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위험 한도 등 제반 정책의 심의·의결 등 위험관리 전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사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위험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험관리협의회에 위임하여 관리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회사의 위험관리는 위험과 수익간 적절한 균형관계를 달성하고, 회사의 경영건전성과 고객자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고유재산 및 집합투자 재산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을 종류별로 인식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위험관리 전략과 관련하여 하나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조직 및 정책과 연계, 회사 사업의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험관리조직의 운영, 위험관리 체계 및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나)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위험관리위원회는 국내외 경제환경, 금융환경 및 회사 재무상황을 바탕으로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을 결정할 수 있으며, 동 위험수준은 위험관리기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위험관리위원회는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를 결정할 수 있으며, 동 한도는 위험관리기준 및 세부지침 등에 반영하거나 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며, 금융환경 변화 및 제도 변경 등을 반영하여 기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 년

1월 26일 개최된 2024년 제1회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금융그룹 편입에 따른 규정 정비를 위한 기준 개정을 하였고, 2024년 2월 27일 개최된 제2회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고유재산의 자사 펀드 투자관련 절차와 조항 정비를 위해 위험관리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마) 기타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조직, 위험관리정보시스템,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 초과에 대한 승인 등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또한, 위험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내위원으로 구성된 사내 위험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 개최현황 및 의사록은 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내 위험관리협의회는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하부 위원회로 매월 개최되며,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을 포함한 주요 부문장과 본부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제반 위험에 대한 적절한 통제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위험관리위원회 위원)

1) 총괄

위험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법령, 정관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인 이상 3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며,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일반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2023년 10월 27일부터 2024년 1월 26일까지 구성된 위원회는 최범수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위원 중 김정기(기타비상임이사) 위원은 하나증권 경영전략본부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바 위 조건에 부합하는 자입니다. 2024년 1월 26일부터 2025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구성된 위원회 또한 최범수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위원 중 김태우(사내이사) 위원은 피델리티자산운용, 다올자산운용 등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바 위 조건에 부합하는 자입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위험위)선임	(위험위)임기 만료일
최범수	사외/비상임	위원장	2023.10.27	2025년 정기주주총회일
안성윤	사외/비상임	위원	2023.10.27	2025년 정기주주총회일
김정기	비상임	위원	2023.10.27	2024.1.26
김태우	상임	위원	2024.1.26	2025년 정기주주총회일

2024.12.31 기준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당사의 위험관리위원회는 분기 1 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2024 년에는 총 5 회의 위험관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위원들의 참석률은 100%로 실질적이고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회의 개최 전 의안을 사전에 배포하여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2024 년 제 1 회 위험관리위원회: 2024.1.26. (안전통지일: 2024.1.19.)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최범수	안성윤	김정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가. 위험관리협의회 규정 개정의 건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
4. 의결안건				
가. 위험관리협의회 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위험관리기준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4 년 제 2 회 위험관리위원회: 2024.2.27. (안전통지일: 2024.2.2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최범수	안성윤	김태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위험관리기준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위험관리협의회 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24 년 투자한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4 년 제 3 회 위험관리위원회: 2024.4.23. (안전통지일: 2024.4.16.)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최범수	안성윤	김태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가. MMF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
나. 위험관리협의회 개최내역 보고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
다. 고유재산 투자현황 보고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

2024 년 제 4 회 위험관리위원회: 2024.7.23. (안전통지일: 2024.7.16.)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최범수	안성운	김태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가. MMF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
나. 개방형펀드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다. 위험관리협의회 개최내역 보고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
라. 고유재산 투자현황 보고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

2024 년 제 5 회 위험관리위원회: 2024.10.22. (안전통지일: 2024.10.15.)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최범수	안성운	김태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가. MMF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
나. 위험관리협의회 개최내역 보고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
다. 고유재산 투자현황 보고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

3) 평가

회사는 위험관리위원회 개최빈도 및 출석률, 시간의 적정성,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수준, 위원회 소집절차 및 안전 사전제공 여부 등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위험관리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8.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2024 년 중 지배구조와 관련한 감독당국의 행정처분·행정지도 등과 이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9.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해당 사항 없음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가. 총괄

회사는 보수체계가 회사의 성과와 이에 따른 리스크 구조의 조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서의 영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보수위원회는 이사회내위원회로서 회사의 주요 보수정책을 상기 철학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16 년 8 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16 년 9 월 이사회에서 '보수위원회규정'을 제정 하였으며, 그 이후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보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보수위원회는 3 명의 위원 중 2 명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었고,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보수위원회규정 제 7 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안건, 의사진행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의사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보수위원회의 충실한 역할 구현을 위해 당사 보수위원회 규정 제 3 조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위험관리위원회 소속 이사 1 인을 포함하여 3 인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 중 1 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4 년에는 한차례 보수위원회가 재구성되었으며, 제 1 차는 2023 년 10 월 27 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보수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총 3 인 (안성윤, 이창구, 김정기)의 위원으로 구성, 이중 2 인(안성윤, 이창구)의 위원이 사외이사이고, 안성윤 사외이사가 보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으며, 위험관리위원인 안성윤 사외이사, 김정기 기타비상임이사를 포함하여 보수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이창구 사외이사는 신한은행 WM 영업본부 본부장, 신한은행 WM 그룹장 부행장보, 신한금융투자 WM 그룹 부사장, 신한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금융 전문가로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었습니다.

제 2 차는 2024 년 1 월 26 일 이사회에서 보수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총 3 인 (안성윤, 이창구, 김태우)의 위원으로 구성, 이중 2 인(안성윤, 이창구)의 위원이 사외이사이고, 안성윤 사외이사가 보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으며, 위험관리위원인 안성윤 사외이사, 김태우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보수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이창구 사외이사는 신한은행 WM 영업본부 본부장, 신한은행 WM 그룹장 부행장보, 신한금융투자 WM 그룹 부사장, 신한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금융 전문가로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었습니다.

2) 구성원

성 명	상임/사외/비상임	직 위	(위원회)선임일	(위원회)임기 만료일	비고
안성윤	사외/비상임	위원장	`23.10.27	`26. 정기주총일	위험관리위원 회계학 박사, 재무금융 및 기업금융 전문가
이창구	사외/비상임	위원	`23.10.27	`26. 정기주총일	금융전문가
김정기	비상임	위원	`23.10.27	`24.1.26	위험관리위원 금융 전문가
김태우	상임	위원	`24.1.26	`26. 정기주총일	금융 전문가

다. 권한과 책임

1) 총괄

보수위원회는 지배구조법 제 22 조 및 내부규정인 보수위원회규정 제 5 조에서 정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 (1)보수의 결정 및 지급 방식에 관한 사항
- (2)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3)보수체계의 설계, 운영 및 그 설계, 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4)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 (5)그 밖에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성과보수의 이연 지급 포함)

다만,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보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보수위원회는 2024 년 1 월 26 일 개최된 보수위원회에서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보수 체계의 설계 및 운영 등을 담은 성과보수운영규정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25 년 2 월 25 일 개최된 제 1 차

보수위원회에서 2025 년(제 26 기) 이사보수한도(안)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2025 년 3 월 28 일 제 2 차 보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 년도 성과보수의 결정 및 지급 (이연보수 포함)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보수위원회는 2025 년 3 월 28 일 제 2 차 보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수지급에 관한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보수위원회규정에 근거한 보수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을 포함한 회사의 보수체계 의사결정 절차, 성과측정 및 위험 조정 기준,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 이연, 지급확정 및 환수 기준, 현금과 주식, 그 밖에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등을 포함한 보수체계의 주요 특성,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수체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한 사항, 그리고 보수에 관한 총계정보와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의 작성기준으로 의결하였고, 현재 제출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보수위원회가 개최된 날의 익월 15 일까지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4) 임원퇴직금규정 제정(안) 심의·의결

보수위원회는 2025 년 2 월 25 일 개최된 제 1 차 보수위원회에서 임원퇴직금규정 제정(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후 주주총회 의안으로 부의하였습니다.

5)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보수위원회는 2024 년 제 1 차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위원회의 구성, 규정, 그리고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보수 중 성과보수의 비율은 성과평가와 연동하고, 그 비율은 책임의 정도, 직무의 특성, 담당 업무의 투자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 조제 1 항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따라 달리 설계하였습니다. 지배구조법에 따라 이연대상자의 이연 대상 금액은 성과급 지급 총액의 최소 40%로 하며, 이연 기간은 당해연도 성과급이 지급된 지급연도로부터 3 년으로 하였으며, 지급연도의 익년도부터 매 3 년간 이연 초기 지급분이 이연 기간별 균등 배분액보다 크지 않게 책정하여 장기성과와 연계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연지급 대상은 등기임원과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정하여 진행하며, 이중 등기임원의 경우 지배구조법상 이연지급 의무대상으로서 성과보수의 일부가 이연 지급됩니다. 그 외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성과급의

이연 지급이 필요한 대상자를 대표이사가 추가로 지정하여 보수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보수위원회는 보수위원회규정에 따라 매년 1 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5 년 제 2 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

현재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체계는 예년과 동일하며, 회사 전체의 재무상황 특히 손익규모 및 자본의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으며, 위험수준에 대해서도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보수의 원칙, 설계 및 조정, 이연지급, 성과보수의 지급형태 및 방식, 현금보수 지급 등에 대해서도 보수체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8)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회사의 보수체계는 한국의 관련법규와 하나금융지주의 규정 하에 관리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위원회는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체계 및 운영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사외이사가 보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보수평가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9)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보수위원회의 보수정책은 하나자산운용(주) 전체 조직에 적용됩니다.

10)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변동보상(성과보수) 대상자는 전체 임직원입니다. 단, 지배구조법은 보수위원회가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25 년 제 2 차 보수위원회에서는 보수체계의 기준에 따라 2024 년도분으로 발생한 변동보상(성과보수) 대상자 중 이연지급이 될 수 있는 대상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결과, 의무적으로 이연지급 대상이 되는 등기임원 외에, 이연지급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와 이에 해당되는 임직원을 확인하였으며 지배구조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연지급됨을 확인하였습니다.

11)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금융투자업무담당자 제외)의 결정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이외에 성과보수의 이연 기준에 해당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의사결정 절차

보수위원회는 연 1 회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 개최일 최소 1 주일전에 각 위원에게 소집사실을 통지합니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 시,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개최된 후 동 위원회 안전과 관련된 추가 권고사항이나 승인사항은 이메일을 포함한 기타 통신 수단에 의하여 토의될 수 있고, 최종 결과는 위원회에 출석한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의사록으로 입증됩니다. 보수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2) 활동내역 개요

보수위원회는 2024 년 7 월 23 일 제 25-3 차 보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석률은 100%입니다. 2024 년 경영성과평가 지표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이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25 년 2 월 26 일에 제 26-1 차 보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석률은 100%입니다. 회사의 보수체계에 따라서 보수를 집행하였음을 확인 후 그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2024 년도 이사보수가 2024 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한도(20 억원)내에서 집행되었음을 보고하였으며, 2025 년도 이사보수한도를 전년과 동일하게 승인한 후 주주총회 의안으로 부의하였고, 임원퇴직금규정의 제정(안)을 심의한 후 주주총회 의안으로 부의하였습니다.

제 26-2 차 보수위원회는 2025 년 3 월 28 일 개최하였으며, 평가연도 기준으로 2024 년도 성과보수액수와 그 지급을 2025 년 1/4 분기 중에 할 것을 포함한 지급 방식에 대하여 논의하고 의결한 후, 본 보수체계연차보고서의 작성과 공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3) 회의 개최내역

2024 년도 제 3 차 보수위원회: 2024. 7. 23. (화) 10:40 (안전통지일: 2024. 7. 1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안성윤	이창구	김태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의결 안건	가. 1 호안건 2024 년 경영성과지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5 년도 제 1 차 보수위원회: 2025. 2. 25. (화) 11:00 (안전통지일: 2025. 2.18)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안성윤	이창구	김태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	가. 보수체계 운영의 적정성 및 전년도 보수 보고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4.의결 안건	가. 1 호안건 2025 년(제 26 기)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 호안건 임원퇴직금규정 제정(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25 년도 제 2 차 보수위원회: 2025. 3. 28. (금) 18:00 (안전통지일: 2025. 03. 28¹⁾)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안성윤	이창구	김태우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의결 안건	가. 1 호안건 2024 년 대표이사 성과보수 지급의 건	찬성	찬성	의결권 불행사	가결
	나. 2 호안건 2024 년도 성과보수의 결정 및 지급의 건(이연보수 포함)	찬성	찬성	의결권 불행사	가결
	다. 3 호안건 ²⁾ 2024 년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채택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보수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소집기간 단축

2) 2024 년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평가

회사는 필요할 경우, 보수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검토하여 보수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보수위원회 의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대면조사 등을 통해 보수위원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위원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전제공 수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 의결의 적시성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보수체계

가. 주요사항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가) 회사 전체 또는 중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회사 전체에 대한 성과는 신규 순유입자금 (Net New Money), 신규 순유입자금에 대한 운용보수 (Net New Run Rate), 법인세차감전이익 (Profit Before Tax), 시장점유율 등으로 구성된 KPI 달성도에 의해 측정되며, 준법경영과 내부통제 관리 등의 건전성 지표도 평가에 반영됩니다.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임원 및 직원의 경우 회사의 주요 지표 달성도, 업무 목표의 달성도, 회사 및 부서에 대한 기여도, 인재관리, 위험관리 등에 대하여 상급자, 동료, 직원에 의한 평가로 성과가 측정됩니다.

고유의 평가 시스템을 통하여 매년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인 평가와 다면평가, 라인매니저 평가로 구성되며, 모든 평가는 계량화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평가 시스템 (Performance Measurement & Management)

- Performance Goals(정량평가): 업무와 관련된 목표를 고객, 조직, 재무, 직무, 리스크 관리 등의 세부항목으로 수립, 평가함. 특히 개별 담당 업무에 따라 맞춤형 리스크 관리 목표를 부여하여 평가함.

- Behaviors Goals(정성평가):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행동 양식 및 윤리 의식을 Integrity, Collaboration, Challenges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필수 컴플라이언스 교육 이수여부, 상벌 및 징계내역 등의 요소도 반영함.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회사 전체의 경영성과와 조직별 경영목표 달성도, 개인의 평가 결과 및 기여도에 의거하여 개인의 보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성과주의문화에 기반하여 성과와 역량, 기여도에 따라 개인의 보수를 결정하는 철저한 성과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단,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는 회사의 재무경영성과에 연동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지배구조법에 따라 이연대상자의 이연 대상 금액은 성과급 총액의 최소 40%로 하며, 이연 기간은 당해연도 성과급이 지급된 지급연도로부터 3 년으로 하였으며, 지급연도의 익년도부터 매 3 년간 이연대상금액의 1/3 을 지급하도록 하며, 지정된 이연 대상자 이외에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성과급의 이연 지급이 필요한 대상자를 대표이사가 추가로 지정하여 보수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대상자에게는 당해연도 성과급 총액의 60%와 3,000 만원 중 높은 금액을 일시 지급 후 그 잔여분을 이연 대상 금액으로 하여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성과보수가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지급 당일에 회사에 고용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있거나, 사직 통보를 한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성과보수액 중 이연 보수액은 3 년 간에 걸쳐 이연지급 하며, 이연 보수액은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 또는 재무성과 미달, 비윤리적 행위 또는 법률 위반으로 인한 징계,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나 손실을 초래할 경우, 퇴직 사유 등으로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조치 될 수 있도록 하여 보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등기임원의 경우 임기 만료에 따른 퇴임 시에는 환수하지 않습니다.

다)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성과보수액 결정시 이연보수액이 이연기간과 배분율을 토대로 결정되며 각 지급 시점도 결정됩니다.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전체 보수액 중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거나 일반직원과 유사하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은 기본급으로 분류하고,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재량인센티브는 성과보수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수액 대비 성과보수 비율을 배분하는 특정 기준이나 고정 비율은 없으나, 당사의 성과주의문화 기반위에 회사 전체의 성과급 재원이 마련되고,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 기여도, 성과 및 평가 등 종합적인 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성과보수액이 결정됩니다.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성과보수의 즉시지급과 이연지급 분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3 년 10 월 27 일자로 지배구조변경 후 현 시점 기준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는 현금입니다.

다)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17 조 및 내부규정 등에 합당하도록 성과보수액 및 보수지급 방식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3 년 10 월 27 일자로 지배구조변경 후 현 시점 기준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는 현금입니다.

라)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성과보수 총액의 60%와 3,000 만원 중 높은 금액은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며, 잔여분은 이연지급 됩니다. 배분비율은 지배구조법을 따르고 있으며, 회사의 보수체계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회사는 직원들의 성과가 기본연봉과 성과급 (재량인센티브)에 연동되는 성과주의 문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회사는 급여규정에 근거하여, 임금 체계를 기본급과 재량 성과급으로 단순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직무 가치, 책임 수준, 경력 및 해당 직위의 시장 가치, 업무 수행 능력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2023 년 10 월 27 일 지배구조의 변경 이후로는 1994 년부터 금융산업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보수체계 서베이를 진행하고 있는 Willis Towers Watson Total Reward Survey 외부 결과를 토대로 회사의 보수체계에 대한 자문 및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해당 사항 없음.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해당 사항 없음.

나. 보수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수 (해당연도 실제 지급액기준)

(단위: 명, 억원)

구 분	임직원 보수총액 (A) ¹⁾	법인세차감전 순이익(B) ²⁾		임직원수 (C)	임직원 평균보수 (A/C)
			비율(A/B)		
전년도 (2023 년)	107.6	66.3	162%	88	1.2
당해년도 (2024 년)	95.1	68.5	139%	87	1.1

주 1) 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 20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연도에 실제 지급한 금액임.

주 2) 법인세차감전순이익(B)은 t 로 기재. 해당연도말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에 해당연도말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비교함.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해당연도 실제 지급액 기준)

(단위: 명, 억원)

구 분		임 원 ¹⁾	직 원
전년도 (2023 년)	보수총액 ²⁾	26.3	81.3
	성과보수액 ³⁾	9.2	11.5
당해년도 (2024 년)	보수총액 ²⁾	4.6	90.5
	성과보수액	0.1	13

주 1) 회사 인력 규모상 임 직원의 각 직급별 보수 총액은 별도 구분하지 않고 기재하였음
(각 연도별 실제 신고된 근로소득 기준임)

주 2) 보수총액에 성과보수액이 포함됨.

주 3) 임원성과보수액에는 퇴직임원의 이연분 중 당해년도 지급한 것이 포함되어 있음.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 보수의 구분 (해당연도 발생액 기준)

(단위: 명, 억원)

구 분		수급자수 ¹⁾	기본급 ²⁾	성과보수액 ³⁾	
					이연지급 대상 ⁴⁾
전년도 (2023 년도)	임원	5	17.1	9.2	7.2
	금융투자업무담당자	2023 년도분에 관해 지정된 자가 없음 (이연기준에 해당 되지 않음)			
당해년도 (2024 년도)	임원	5	4.5		
	금융투자업무담당자	13	17.7	12.2	4.9

주 1) 해당년도중 6 개월이상 근무한 임원 기준으로 기재함 (이하 동일)

주 2) 보수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기본급'으로, 성과와 관련하여 지급되면 '성과보수'로 분류

주 3) 당해년도 실제지급분 기재

2) 성과보수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성과보수액				
			현금	주식 ¹⁾	주식연계상품 ²⁾	기타 ³⁾
전년도 (2023 년도)	임원	9.2	9.2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당해년도 (2024 년도)	임원	-	-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12.2	12.2	-	-	-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이연보수액 ¹⁾		
			지급확정 ²⁾	지급미확정 ²⁾
전년도 (2023 년)	임원	7.3	7.2	0.1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지정된 자가 없음 (이연기준에 해당 되지 않음)		
당해년도 (2024 년)	임원	0.2	0.1	0.1
	금융투자업무담당자	4.9	-	4.9

주 1) 이연보수액: 이연보수액은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수액을 기재하였고, 해당연도분으로 발생한 이연보수는 각각 3~5 년에 걸쳐 이연함.
주 2) 특정년도말 시점의 주 1)의 누적 이연보수액을 포함한 금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되어 2024 년에 지급된 금액을 '지급확정'으로 기입함. 지급시점이 미도래한 이연금액은 '지급미확정'으로 구분 기재하였음.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이연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전년도 (2023 년)	임원	0.1	0.1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지정된 자가 없음 (이연기준에 해당 되지 않음)				
당해년도 (2024 년)	임원	0.1	0.1			
	금융투자업무담당자	4.9	4.9			

주) 각 연도별 말일자 기준의 이연보수누적액 기입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억원)

구 분		이연보수액					
			t 기	t-1 기	t-2 기	t-3 기	이전
전년도 (2023 년)	임원	0.1		0.1	0.1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지정된 자가 없음 (이연기준에 해당 되지 않음)					
당해년도 (2024 년)	임원	0.1		0.1	0.0		
	금융투자업무담당자	4.9	4.9				

주)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현재 누적 이연보수액을 2024 년도 발생분(t 기), 2023 년도 발생분 (t-1 기), 2022 년도 발생분(t-2 기), 2021 년도 발생분 (t-3 기), 2020 년도 이전 발생분 (이전)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해의 이연보수액 합에서는 기 지급된 금액은 차감되었음.

6) 이연보수의 조정

(단위: 억원)

구 분	이연보수액	
-----	-------	--

		축소액	직접적 조정	간접적 조정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 ^{주)}
전년도 (2023 년)	임원	삭감, 환수에 따른 조정이 없었음. 2023 년 10 월 지배구조변경으로 인하여 UBS AG 이연보수액의 지급 정산 처리됨.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지정된 자가 없음 (이연기준에 해당 되지 않음)			
당해년도 (2024 년)	임원	삭감, 환수에 따른 조정이 없으며, 기타 사유에 의하여 이연보수가 축소된 경우 없었음.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삭감, 환수에 따른 조정이 없으며, 기타 사유에 의하여 이연보수가 축소된 경우 없었음.			

주) 잠재적으로 직접적, 간접적 조정에 노출되어 있는 이연보수액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단위: 명, 억원)

구 분		수급자수	퇴직보수액	1 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23 년)	임원	해당사항 없음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당해년도 (2024 년)	임원	해당사항 없음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주)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퇴직보수액에서 제외.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하나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Hana Asset Management Company Ltd.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①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업 - 회사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매에 한함
2. 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 회사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중개에 한함
3. 집합투자업 - 모든 종류의 집합투자기구
4. 투자자문업무
5. 투자일임업무
6. 콜거래업무
7. 어음매입업무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②회사는 제1항의 업무 이외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 다른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제3조(본점의 소재지 등) 회사는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 및 국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anaam.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하되 동 신문에 게재할 수 없을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천사백만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육백만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9조(주권) ①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다만,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주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삭제>

제9조의2(주식의 양도제한 등) 주주가 그 소유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사전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제10조(주권의 불소지) ① 주주가 그 기명주식에 대하여 주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때에는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그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고를 수리하고 절차를 완료한 때에 회사는 그 사실을 기재한 통지서를 주주에게 발송한다.

③ 제1항의 신고를 한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에 제2항의 청구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지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1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외자유치, 긴급한 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기타 경영상의 목적으로 국내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가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주식명의개서등) ①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절차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주식사무규정에 따른다.

②회사 명의개서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주식사무취급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주주 등의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주주 또는 등록질권자 및 그들의 대리인은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주주 또는 등록질권자가 외국에 거주할 때에는 대한민국 내에 거주소 또는 대리인을 정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회사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신고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⑤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결산기가 끝나는 다음날인 결산기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③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 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 채

<삭제됨>

제4장 주 주 총 회

제21조(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2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총회의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소집통지)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4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사 전원이 유고시에는 출석
주주 중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임된 자가 된다.

제26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
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8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0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
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
여야 한다.

제29조의2(성립정족수) 주주총회는 회사의 의결권부 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보유한 주주가
직접 또는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통해 출석한 경우에 성립된다. 본 조의 성립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주주총회의 개최는 그 효력이 없다.

제30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이나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
다.

제30조의2(특별결의사항) 다음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사가 발행할 주식수의 증감 또는 납입자본금의 감소
3. 회사의 해산 또는 청산

4.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또는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의 양수
5. 합병
6.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7. 기타 한국 상법 또는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항
8. 회사의 배당정책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배당 승인
9. 회사의 영업과 관련하여(영업의 확장을 포함) 관련법령(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 포함)을 준수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직전 회계연도 말 자본금의 20%에 달하기까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주주 대하여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매수선택권, 기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달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행사될 수 있는 증권 또는 권리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발행 직후 이러한 증권 또는 권리에 따라 주식이 발행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되고 이러한 증권 또는 권리의 조건에 따라 최대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졌을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위 제9호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경우
11.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매수선택권, 기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달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행사될 수 있는 증권 또는 권리를 발행하는 경우

제30조의3(주주총회의 진행) <삭제>

제31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와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 이사회

제32조(이사의 수) ①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

②이사는 상임이사, 비상임이사(이하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를 합하여 “비사외이사”라 한다)와 사외이사로 구분하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하되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33조(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이하로 하며,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만,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5조(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2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대표이사등의 선임) 회사는 대표이사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제37조(이사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삭제>

③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관련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사회 의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③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되, 매분기마다 적어도 1회 이상의 이사회가 개최되어야 하고, 이사회 의장이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중 1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만약, 이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사는 스스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며, 이사회 의안 및 참고자료는 적어도 회의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개최장소는 대한민국 서울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로 다른 곳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40조(이사회의 성립정족수와 결의방법)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이사회의 결의는 정관이나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회의를 허용한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2.6.21 개정)

③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0조의2(이사회의 특별결의사항) <삭제>

제41조(이사회의 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이사회의 진행) <삭제>

제42조(위원회) ①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삭제>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 감사위원회
4. 위험관리위원회
5. 보수위원회

②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이나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2조의2(경영위원회) <삭제>

제43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관련 법령 및 인사관련 제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4조(상담역 및 고문) <삭제>

제6장 감사위원회

제45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 내의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지배구조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③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④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의 수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한다.

⑤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사외이사 중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⑥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총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인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⑧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제46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①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중에서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47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7장 계 산

제48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9조(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①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②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위원회는 제3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⑤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49조의2(재무제표의 작성기준) 회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 된다.

제50조(재무제표 등의 승인 공고) ①이사는 제49조 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제49조 제2항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손익계산과 처분) 회사의 손익계산은 매결산기의 총수익으로부터 총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순손익금으로 하고 이에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합하여 다음 방법에 따라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주주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52조(이익배당)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하되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월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8장 보 칙

제53조(세부사항) 회사업무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시행한다.

제54조(규정의 사항) 이 정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나 상법, 기타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외이사후보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최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는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제1기 사업년도) 당 회사의 제1기 사업년도는 이 회사 성립일로부터 2001년 3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4조(발기인 주소·성명) 당 회사 발기인의 성명·주민(사업자)등록번호·주소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

2000년 6월 일

발기인 성 명 : 대한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덕훈 (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116-81-05992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발기인 성 명 : 이 덕훈 (인)
주인 (사업자)등록번호 : XXXXXX-XXXXXXX
주 소 : XXXXXXXXX

발기인 성 명 : 한 동직 (인)
주인(사업자)등록번호 : XXXXXX-XXXXXXX
주 소 : XXXXXXXXX

부 칙(1) 이 정관은 2002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이 정관은 2004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3) 이 정관은 2007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4) 이 정관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5) 이 정관은 200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 이 정관은 201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

제1조 (시행일) 제40조 제2항은 2012년 6월 21일부터, 제48조는 2013년 4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사업년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회사의 제14기 사업년도는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8) 이 정관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 이 정관은 2017년 7월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이 정관은 2019년 3월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이 정관은 2023년 10월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이 정관은 2024년 3월19일부터 시행한다.

이사회규정

2020.4.23. 제정

2023.10.27.개정

2024.2.27. 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제정 및 폐지) 이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개정에 따른 경우나 단순한 용어변경 등 내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구성 및 임기)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회사의 사업과 관련한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의 부작용이 없도록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제 5 조(이사회역할과 책임) ①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그에 따른 업무 집행을 감독·감시한다.

② 이사회는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내부통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통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리스크 한도관리 등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해 관리·감독을 한다.

③ 이사회는 주주, 투자자,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정당한 이익 및 회사의 장기적 발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6 조(회의소집) 이사회는 이사회의장 또는 각 이사의 요청으로 분기 1 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에는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 7 조(소집통지)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7 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이사 전원이 동의할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8 조(회의성립) 회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 9 조(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①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단,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한다. <개정 2023.10.27.>

②이사회 의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 회사로부터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④ 회사는 선임사외이사가 제 3 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10 조(위원회)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각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삭제 <개정 2023.10.27.>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개정 2023.10.27.>

제 11 조(결의사항)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 안건에 관한 사항. 단, 사외이사 선임 등 성격이 상이한 안건들을 개별 안건으로 주주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2. 정관 등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다만, 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한 자구수정은 제외한다.
3. 기본경영에 관한 사항
 - 가.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나.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다. 현금배당, 중간배당, 이익소각
 - 라. 회계처리기준의 변경
 - 마. 현지법인·지점·영업소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바.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 가. 신주발행 및 자본감소
- 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 다. 사채발행
- 5. 이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삭제<개정 2023.10.27.>
 - 나.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및 폐지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제외)
 - 다. 이사회에서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 라. 회사와 이사 또는 계열사 등 간의 거래 승인
 - 마. 이사 등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
 - 바. 선임사외이사에 관한 사항
 - 사. 이사회 평가, 이사회 내 위원회 평가, 사외이사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27.>
- 6. 중요 계약 등에 관한 사항
 - 가. 직전 회계연도 말 자본총액의 3%이상에 해당하는 업무용자산(동산, 부동산, 전산기기 등)의 처분 또는 취득<개정 2024.2.27>
 - 나. 직전 회계연도 말 자본총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차입금, 대여금, 대지급금 (해당년도 누적적용) 및 고유자금 투자 건 <개정 2024.2.27>
 - 다. 제 3 자를 위한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 7.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 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8.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 9.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10. 관련법령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
- 11. 기타
 - 가. 전략기획 담당임원, 재무관리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개정 2023.10.27.>
 - 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2 조(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와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결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결의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13 조(보고사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및 그 실적
2. 이사회 내 위원회의 심의 및 결의사항
3. 다른 규정에서 정한 이사회 보고사항
4. 그 밖에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4 조(의사록의 작성, 보존) ① 이사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15 조(실무주관부서) ① 이사회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지원조직을 둔다.

② 이사회 지원조직은 이사회와 사외이사에 대한 업무를 지원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 년 4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 년 10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 년 2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지배구조내부규범

2016.07.25. 제정

2019.01.30. 개정

2023.10.27. 개정

2024.02.2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1) 이 규범은 하나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 경영의 적법성, 투명성,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등 관계 법령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회사 정관 및 타 내부규정 등과 함께 이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법령과의 관계) (1) 이 규범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배구조법', 상법 등 관계 법령과 상충되는 경우 이 규범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2) 회사는 '지배구조법'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매년 이 규범에 따른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공시하여야 한다.

제3조 (제정 및 개폐) 이 규범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개정에 따른 경우나 단순한 용어변경 등 내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는 '지배구조법'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제정·변경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4조 (정의) 이 규범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 규범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지배구조법', 동법 시행령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2장 이사회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이사회 구성) (1) 이사회 구성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2)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하되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한다.

(3) 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조에서 정한 인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해당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1)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단,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한다.

(2) 이사회 의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회는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며,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제7조 (이사의 자격요건) (1)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정직성을 가져야 한다.

(2) 상임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상임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8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1) 사외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로,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및 충실성을 갖추어야 하며,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제9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1)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과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중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및 그 실적
2. 이사회 내 위원회의 심의 및 결의사항
3. 이사회 규정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이사회 보고사항
4. 그 밖에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이사의 권한과 책임) (1) 이사는 주주 및 회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이사는 경영진에 대해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회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관계회사를 포함한다)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배하거나 의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진다. 단,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6)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7) 사외이사는 본인이 겸직하고 있는 외부 기관과 회사 및 관계회사와의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및 당해 외부 기관에서 사임하거나 그 직무, 성격, 업무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통보하고 본인의 사임 여부에 관한 동 위원회의 판단을 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사의 선임)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이전에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1.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3년 이하
2. 사외이사: 2년 이내, 1년 단위로 연임 가능, 단 회사에서 5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거나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이사의 퇴임 기준과 절차) (1)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한다.

1. 임기 만료
2. 사직
3. 관련 법령 및 정관, 규정에서 정한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실 또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등 이사로서 신분을 유지하는 데 부적합한 사유가 있어 주주총회에서 해당 이사를 해임하기로 하는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2) 이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라도 법정수를 결하지 않을 때는 그 보궐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임된 경우, 피선된 이사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3조 (이사회의 소집절차)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관련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하되, 매분기마다 적어도 1회 이상의 이사회가 개최되어야 하고, 이사회 의장이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중 1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만약, 이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사는 스스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며, 이사회 의안 및 참고자료는 적어도 회의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 (의결권의 행사)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이사회 의결의는 정관이나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회의를 허용한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이사회 의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5조 (운영실적 등의 평가) (1) 이사회는 이사회 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초 이사회 의 운영 및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이사회 의 운영 및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를 이사회 운영에 참고한다.

(3) 이사회는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방법을 정하고, 평가결과를 사외이사 재선임 시에 참고한다.

제3장 이사회 내 위원회

제16조 (이사회 내 위원회) (1) 이사회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한다.

1. 삭제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 감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위험관리위원회

(2) 이사회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3) 이사회 내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결의로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에 한한다.

(4)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5)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권한 등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각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경영위원회) 삭제

제18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권한 등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2) 감사위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3) 회사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인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4)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으며, 최대주주는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5)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6) 회사의 감사부서는 감사위원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7) 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8) 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9)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그 직무에 관하여는 회사 정관에 따른다.
- (10)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권한 등에 관련한 세부사항 중 정관과 이 규범에서 정하지 않은 바는 감사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보수위원회) (1) 보수위원회는 위험관리위원회위원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2) 보수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하며, 이하 본 조에서 동일함)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수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회사는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보수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성과보수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1. 보수 중 성과보수의 비율은 성과평가와 연동하고, 그 비율은 책임의 정도, 직무의 특성, 담당 업무의 투자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따라 달리 할 것
- 2.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담당 업무의 투자성 정도, 투자성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3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할 것. 다만, 담당업무의 투자성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성의 존속기간 수준으로 이연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 3. 제2호에 따라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할 경우에는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배분한 수준보다 크지 않도록 할 것

4.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은 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급할 것
- (5) 회사는 임원 및 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산 후 3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시한다.
- (6)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 제외), 사외이사(감사위원 제외), 감사위원, 업무집행책임자, 상법에 따른 집행임원 등 임원의 유형별 총액(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보수총액)으로 작성한다.
 1. 보수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을 포함한 회사의 보수체계 의사결정 절차
 2. 성과측정 및 위험 조정 기준,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 이연, 지급확정 및 환수 기준, 현금과 주식, 그 밖에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등을 포함한 보수체계의 주요 특성
 3.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5.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수에 관한 총계정보와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
 - 가. 회계연도 중 보수액(기본급 및 성과보수를 구분하고 대상 임직원 수를 포함한다)
 - 나. 성과보수 금액 및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및 기타로 구분한다)
 - 다. 이연된 성과보수(지급이 확정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한다)
 - 라. 이연된 성과보수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
 - 마. 회계연도 중 지급된 퇴직 관련 보수금액, 해당 임직원 수 및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 바. 회계연도 중 임직원에게 지급된 보수금액, 직급별 보수액 및 성과보수액(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총계정보를 포함함)
- (7) 위원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8)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9) 보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권한 등에 관련한 세부사항 중 이 규범에서

정하지 않은 바는 보수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위험관리위원회) (1)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총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위원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위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권한 등에 관련한 세부사항 중 이 규범에서 정하지 않은 바는 위험관리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 (1) 이사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초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평가결과를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에 참고한다.

제4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23조 (임원의 범위) 이 규범에서 임원이라 함은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사외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총칭한다.

제24조 (등기이사인 임원의 자격요건) 등기이사인 임원의 자격요건은 제7조 (이사의 자격요건)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25조 (등기이사 아닌 임원의 자격요건) (1) 등기이사 아닌 임원은 대표이사로부터 위임 받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2) 등기이사 아닌 임원은 전문적 지식 및 투철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3) 등기이사가 아닌 임원 선임 시 관련 법령상 임원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4) 준법감시인은 '지배구조법'제26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된 후에 '지배구조법'제26조제1항제1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5)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배구조법'제28조제3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하며, 위험관리책임자가 된 후에 '지배구조법'제28조제3항제1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26조 (임원의 권한과 책임) (1)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대표이사가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등기이사 아닌 임원은 대표이사가 정한 업무분장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수행상 기본이 되는 법령, 정관 회사의 내규 및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등기이사 아닌 임원은 담당직무에 상응하는 전결권을 행사한다.

제27조 (임원의 선임) (1) 등기이사인 임원의 선임은 제11조(이사의 선임)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등기이사 아닌 임원은 대표이사가 선임하며 위촉계약을 체결한다. 대표이사는 등기이사가 아닌 임원 선임 시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전략기획 및 재무관리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는 대표이사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4) 등기이사가 아닌 임원의 임기는 최초 선임 시 2년 이상(그룹사 내의 임원으로서의 위촉계약기간 포함), 연임 시 1년 이내로 한다.

(5)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제28조 (임원의 퇴임) (1) 등기이사인 임원의 퇴임은 제12조에 따른다.

(2) 등기이사 아닌 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처리하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임기의 만료
2. 사직
3. 회사의 인사규정상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인사관련 제 내규에서 정한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기타 임원으로서 신분유지 및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략기획 담당임원, 재무관리담당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를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해임은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4) 임원의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29조 (임원 및 임원후보자에 대한 교육) 임원 및 임원후보자는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회사 내부 또는 외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제30조 (임원의 성과평가 및 보수) 임원의 (i) 성과에 대한 평가주체·방법·절차·지표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 (ii) 임원 보수의 구성내역·지급방법 등 보수체계는 인사관련 제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제31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1) 회사는 하나금융그룹의 장기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하여 안정적 경영승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회사의 상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또는 개시결정 시기를 정한다.

(3) 이사회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선임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한다. 다만,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선임 시까지의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 회사운영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한다.

(4) 회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원칙 등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한다.

제31조의2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 회사의 이사회 지원 담당부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자격검증업무

2.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32조 (최고경영자의 자격) (1)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하나금융그룹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선임되어야 한다.

제33조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절차 및 공시) (1) 회사의 최고경영자 후보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대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자문기관 등의 예비후보 추천을 받아 결정하며, 주주총회에서 최고경영자를 선임한다.

(2) 회사는 최고경영자후보 추천 및 선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최고경영자후보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최고경영자후보 제안자 및 최고경영자후보와의 관계
4. 최고경영자후보와 회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
5.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6. 최고경영자후보자 추천이유
7. 최고경영자후보자의 경력
8. 그 밖에 최고경영자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4조 (책임경영체제 확립) (1) 회사의 최고경영자의 선임 및 퇴임 관련한 사항은 제11조(이사의 선임) 및 제12조(이사 퇴임기준과 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며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최고경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는 이사회나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범은 2016.08.01.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적용배제) 회사의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미만이 될 경우, 제20조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범은 2019.01.30.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범은 2023.10.27.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범은 2024.02.27.부터 시행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2024.02.27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하며,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회규정 제 11조 제5호 다목에 의해 위원장이 선임된 경우 위원회에서 선임한 것으로 본다.

제3조(역할) ① 위원회는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외이사 선임원칙을 수립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회사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후보를 물색하여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항목별로 검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각 후보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 회사와 여신거래 등이 있는 경우 회사로 하여금 거래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이를 검증하고, 동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대표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2. 사외이사 선임원칙 수립, 상시적인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추천에 관한 사항
3.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제2호의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내역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단 해당 후보가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

만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본인이 후보로 추천되는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이 스스로를 후보로 추천하지 못한다.

제7조(추천절차) ① 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경영진 또는 이사회 지원부서에 예비후보군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예비후보가 관련 법규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후보군 발굴시 필요한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위원회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서에 사외이사 평가결과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공시) 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한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일(통지에 갈음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일을,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에 법령에서 정하는 양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후보추천절차 개요
2. 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약력
3. 후보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한다)
4. 후보와 회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
5. 관계법규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6. 후보자 추천 이유
7. 후보자의 경력
8. 그 밖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사외이사 후보 인선 자문단 운영)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후보 인선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관계인 출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내부 또는 외부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실무주관부서) 위원회에 관련된 실무의 주관부서는 이사회 지원 담당부서로 한다.

부칙<제정>

이 규정은 202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위원회규정

제정 2002.09.01
개정 2005.10.21
개정 2008.11.04
개정 2016.09.08
개정 2018.12.13
개정 2024.02.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에 설치할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조(역할) 위원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무감사 및 업무감사
2.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3. 감사업무 담당부서장(이하 "감사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의 임면에 대한 동의
4. 외부감사인의 선정
5.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승인
6.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7.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8.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9.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4조(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원칙적으로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 (경영진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와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등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5조(의무) 위원회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
3.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독립의 원칙) 위원회는 이사회, 집행기관,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① 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이상 감사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경영진 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또는 감독당국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감독원장이 정한 양식의 감사위원회 등의 업무내용 보고서를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권한대행) ① 감사위원의 미착임, 출장,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고 사안이 긴급한 경우 감사담당부서장이 이를 대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② 제16조에 따른 위임사항과 위원회가 위임을 결의한 사항은 감사담당부서장이 전결처리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장 회의

제11조(회의의 종류 및 소집절차)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각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개최할

수 있다.

제12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성립된다. 다만 제13조제3호마목(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요청)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결사항)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나.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나.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다.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라.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마.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가. 감사계획의 수립

나. 내부감사 관련 업무, 재산 전반의 조사

다. 감사담당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라.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마. 외부감사인의 선정 및 해임요청

바.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승인

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자.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4. 기타

가. 감사업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나.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다.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관계인의 출석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결의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 및 보고

제16조(감사업무의 위임) 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사담당부서장에게 위임하며, 감사담당부서장은 위임받은 사항의 주요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업무규정에 따른 감사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3. 감사실시 등 내부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업무에 대해서는 위원회 승인 또는 추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4. 제7조 제3항에 따른 보고
5. 기타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제17조(준법감시인 관련 사항) 준법감시인은 법령, 정관, 대표이사,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업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1. 내부통제 계획 및 내부통제기준의 수립·이행에 대한 사항
2. 준법모니터링시스템에 의한 상시감시 및 주기적인 점검결과
3. 관계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제5장 보칙

제18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보조조직) ① 회사의 모든 내부감사 기구 또는 조직은 위원회의 소속 하에 둔다.

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업무담당부서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사업무담당부서는 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한다.

제20조(감사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1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22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감사업무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

이 규정은 2005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이 규정은 2008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이 규정은 2016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

이 규정은 202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정 2016. 09. 08

개정 2021. 07. 21

개정 2024. 02. 2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2조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선임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일반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위원장이 선임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선임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사외이사인 위원의 임기는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제한 시 위원회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회의소집)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분기 1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각 위원이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사전통지 없이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제4조 (임무 및 권한)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수립
 - (2)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 (4) 위험관리기준, 위험관리협의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5)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 (6)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7)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8)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관계부서 및 직원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 또는 외부의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 위험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결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6조 (위험관리협의회)

-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험관리협의회라는 하부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위험관리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험관리협의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 ③ 위원회는 위험관리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험관리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결의로서 해당 안건을 재심의 또는 재결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심의 또는 결의는 위원회의 재심의 또는 재결의로 대체된다.

제7조 (부문별 위험관리)

각 부문별 위험관리는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의사록의 작성 및 보관)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주관부서)

위원회와 관련된 실무는 위험관리담당부서에서 주관한다.

제10조 (제정 및 개폐)

이 규정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개정에 따른 경우나 단순한 용어 변경 등 내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의결로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보수위원회규정

2016. 9. 8. 제정

2024. 2. 27.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임원"이란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및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를 제외한 임원을 말한다.
- ②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위원회가 결의한 자를 말한다.
- ③ "보수"란 정기·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및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성격의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 외에 지급되는 성과급을 의미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험관리위원회 소속 이사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② 위원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하며,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회규정 제11조 제5호 다목에 의해 위원장이 선임된 경우 위원회에서 선임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사외이사인 위원의 임기는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 시 위원회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대상자 결정
2. 지주회사의 「하나금융그룹 보수 및 성과평가 규정」 등에 따른 회사의 임원·금융투자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성과 평가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지주회사의 「하나금융그룹 보수 및 성과평가 규정」 등에 따른 회사의 임원·금융투

자업무 담당자 등의 보수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4. 지주회사의 「하나금융그룹 보수 및 성과평가 규정」 등에 따른 회사의 임원·금융투자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수 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수 체계와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와 회사의 주주가 적용받는 제반 법규정을 준수한다.

제6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위원회가 개최된 후 동 위원회 안건과 관련된 추가 권고사항이나 승인사항은 이메일을 포함한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토의 될 수 있고, 최종 결과는 위원회에 출석한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의사록으로 입증된다.

③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사록의 작성 및 보관) 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의사록은 의사진행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8조(실무주관부서) 위원회에 관련된 실무의 주관부서는 인사 담당부서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정) 본 규정 시행과 동시에 보상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